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추승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 범위가 일부 조항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이를 동일하게 하는 한편 누락이 발생한 일부 조문을 바로 잡아 조례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